



상품보증서비스계약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西羽 真(2017)에 따르면 산업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상품을 제공 또는 판매 시에 상품의 고장 등에 대한 보증서비스 계약을 제공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보증서비스 계약의 보험업법 적용여부에 대한 이슈가 많은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음. 법규측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한 국가는 미국으로 1995년에 NAIC가 모델법을 제정하였으며 뉴욕주 등 35개 주가 채택하고 있음. 영국과 호주도 보증서비스 계약의 보험업법 적용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5년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적용기준을 마련한 바 있음. 이들 국가들의 경우 제조자와 판매자의 제품결함으로 인한 고장에 대한 보증서비스 제공은 보험업이 아닌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으나,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서비스는 사안별로 보험업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최근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보증서비스계약¹⁾이 많이 사용됨에 따라 이들의 보험업 해당여부에 대한 이슈가 국내외에서 부각되고 있음
- 미국은 1970년부터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의 보험업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NAIC는 서비스계약모델법(service contract model law, 685, 1995)²⁾을 제정하였음
 - 동 모델법은 서비스계약³⁾을 제조자 및 판매자가 제공하는 경우와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험업 적용여부를 규정하고 있음
 - 뉴욕주 등 35개주가 동 모델법 또는 관련 규정(related state activity)을 도입하였음
 - 뉴욕주는 서비스계약의 보험업 해당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실질적인 지배기준(substantial control

1) 보증서비스는 금전을 징수하여 사고발생 시에 역무(役務)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증하는 것을 말함. 상품보증서비스는 상품의 결함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 등의 보증서비스를 의미하며, 보증서비스를 제조자와 판매자가 제공하는 경우와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됨

2) NAIC(2017), Service Contract Model Act 참조.

3) 동 모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Warranties, Maintenance Agreements/Commercial transactions/주정부 등 공공기관 규제를 받는 공공유틸리티기관이 제공하는 Warranties, Maintenance Agreements/소비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service contract'임(모델법 Section 1 B)

test)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제조자 및 판매자가 제품결함으로 인한 고장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서비스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 제공 등 기타보증서비스는 보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표 1〉 상품보증서비스의 보험업 판단에 사용하는 지배기준(뉴욕주)

제공주체	서비스유형	상품보증 서비스 대상 유형	
		결함에 기인한 고장인 경우	외부원인에 의한 고장인 경우
제조자, 판매자가 직접 제공		지배가능 =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음	지배불가능 = 보험업에 해당함
제조자, 판매자 외의 제3자가 제공		지배불가능 = 보험업에 해당함	지배불가능 = 보험업에 해당함

자료: 西羽 真(2017), p. 152

■ 또한 EU지침⁴⁾은 상품보증서비스인 상업적 보증(commercial warranty)과 상품보증인 법적보증(legal guarantee) 모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주체 간(제조자와 판매자, 제3자) 차이를 규정하고 있음

- 그 행위가 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규제를 적용하며, 유럽소비자센터네트워크 보고서⁵⁾에 따르면 보험계약과 보상중복이 되는 문제에 대해 보험법 개정을 진행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13년 국제법조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⁶⁾의 상품보증서비스계약의 보험업 적용조사에 따르면, 상품판매 시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품보증이나 상품보증서비스는 보험계약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호주는 제조자와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보험계약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제조자와 판매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업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명기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 있음(캐나다, 이스라엘, 스웨덴, 영국)
 - 또한 독일, 스위스, 미국 뉴욕주는 보험업 해당여부의 판단요소로 거래의 독립성(또는 다른 거래의 부수성)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2005년부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증서비스(warranty, guaranty, surety) 계약에 대한 법규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⁷⁾

- 일본은 2005년 보험업⁸⁾의 정의를 ‘불특정한 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사업’에서 불특정한 자

4) Directive 1999/44/EC

5) The European Consumer Centre Network(2015) 참조

6) Perter Etzbach(2013) 참조

7) 西羽 真(2017), pp. 135~163 참조

를 제외하여 그동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업(소규모 공제 등 유사보험)도 보험업법 적용범위로 편입함과 동시에 협동조합원 등 특정인 대상 보험사업에 대한 적용제외규정을 도입하였음

- 적용제외 보험사업의 세부내용은 2006년 3월 시행령에 규정되었으며, 상품보증서비스 계약 등에 대한 보험업 적용제외 판단기준은 소액단기보험업자감독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감독지침은 적용제외 판단기준 3가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① 사회관행에 기초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경조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보증서비스가 약정내용, 제공주체 및 방법, 종래 보험거래와 다른 것으로서 인지되는 지 여부는 보험업법의 규제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유무를 판단 ③ 제조판매에 부수하는 상품보증서비스는 보험업 해당되지 않음

- 제조자 및 판매자의 상품보증서비스는 보험업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의 상품보증서비스는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규제적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사업자 법규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린존해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린존해소제도는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기초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규제의 적용법규가 모호한 경우 사업자가 관련 법규의 적용유무를 직접 조회하는 제도임

- 동 제도를 통해 상품보증서비스 계약의 보험업의 해당여부도 결정되고 있음

■ 주요국 현황을 요약하면, 상품보증서비스 계약 중 제조자와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의 본질적인 결함에 대한 상품보증서비스는 보험업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서비스는 보험업 해당 여부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보증서비스는 제조자와 판매자와 같이 제품의 성능이행이나 보증책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 제공 간의 피보험이익 성립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임

● 일본과 미국은 보험업법규에서 상품서비스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⁹⁾과 호주¹⁰⁾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판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상품보증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보험업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을 검토 및 논의할 필요가 있음

8) 현재 일본의 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보험, 일정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보험, 기타의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인수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9) FCA(2017) 참조

10)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2017) 참조

참고문헌



西羽 真(2017), 第三者が実施主体となる商品保証サービスへの保険業法適用に関する考察, 「損害保険研究」, 第78卷4号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2017), extended warranties(<http://asic.gov.au/for-finance-professionals/afs-licensees/applying-for-and-managing-an-afs-licence/licensing-certain-service-providers/extended-warranties/>)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2017. 4. 25);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9L0044:en:HTML>

FCA(2017. 4. 25),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 PERG 6(<https://www.handbook.fca.org.uk/handbook/PERG/6.pdf>)

NAIC(2017. 4. 25), Service Contract Model Act(<http://www.naic.org/store/free/MDL-685.pdf>)

Perter Etzbach(2013), The Legal Nature of Insurance Contracts, IBA Insurance Committee Substantive 참조

The European Consumer Centre Network(2015), Commercial warranties—are they worth the money?